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6,373,508,634	191,205,259
일반회계		5,711,221,071	171,336,632
특별회계		662,287,563	19,868,627
	기타특별회계	662,287,563	19,868,627
	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	3,500,000	105,000
	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	47,260,065	1,417,802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92,567,371	11,777,021
	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2,568,328	77,050
	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	116,000	3,480
	소방특별회계	216,275,799	6,488,27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1,798,72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0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